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9 - 495 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①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가의1 지역,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 (안 제10조제3호 등)
- ②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규정
 -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 (안 제18조제2항제2호)
 - 개별수출허가 제출서류 (안 제21조제9항)
 -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재수출 효력 (안 제28조제4항)
 -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안 제34조제2항제2호)
 -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하는 대상 (안 제50조제1항)
 - 중개허가 심사 면제 (안 제53조제1항제2호)

③ 고시 재검토 기한 3년 연장 (안 제9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과)에게 제출하고자 할 경우 아래 주소 참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또는 첨부

※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팩스 : 044-203-4708
- 이메일 : ecpd@korea.kr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과 같다”를 “구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지역은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과 같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별표 6의 “나”지역”을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 2 지역(이하 “가의2 지역”이라 한다) 또는 나 목 중 나 지역(이하 “나 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을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1 지역(이하 “가의1 지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가의2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 본문 및 제14호 본문 중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을 각각 “가의1 지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별표 6의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제10조제2호의 나 지역”을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제2호의 나 지역”을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6의 “나”지역”을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6의 “가”지역”을 “가의1 지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가”지역”을 “별표 6 제1호 가 목의 지역”으로 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아래 별표 6 참조)

별표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아래 별표 19 참조)

부 칙 <제2019-495, 2019.9.00(시행일 확정후 입력 예정)>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허가지역의 구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32조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여부 등을 고려하여 허가지역을 <u>다음 각 호와 같이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과 같다.</u></p> <p><u>1. 가 지역 : 영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모두 가입한 국가</u></p> <p><u>2. 나 지역 : 제1호 이외의 국가</u></p> <p><u><신 설></u></p>	<p>제10조(허가지역의 구분) ① ----- ----- ----- ----- <u>구분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u>② 제1항에 따른 허가지역은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과 같다.</u></p>
<p>제18조(수출허가의 지침) ① (생략)</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p>	<p>제18조(수출허가의 지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1. (생략)

2. 별표 6의 “나”지역으로의 수출허가시 신청품목의 최종 사용용도와 사용장소가 표시되고, 제1호에 규정된 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수출허가 신청품목(장비, 물질, 관련기술 또는 복제품 등)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원자력 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이 아닌 지역으로 재수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서약서 제출로 같음)를 최종사용자로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3. (생략)

③ ~ ⑧ (생략)

제21조(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 면제 등)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1. (현행과 같음)

2.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2 지역(이하 “가의2 지역”이라 한다) 또는 나 목 중 나 지역(이하 “나 지역”이라 한다)-----

3.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 면제 등) ① -----

----- 별표 6
제1호 가 목 중 가의1 지역(이하 “가의1 지역”이라 한다)---

면제한다.

② 삭 제

③ ~ ⑦ (생 략)

⑧ 제2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를 면제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별표 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의 “가”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2.·3. (생 략)

⑨ (생 략)

<신 설>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①
전략물자 중 기술이 아닌 것

-----.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 가의1 지역 -----

-----.

2.·3.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⑩ 제2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을 가의2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한다.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 ①

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다만,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 각 호는 최종목적지 국가가 수단, 시리아, 북한 중 한 곳이거나, 이들 국가 중 한 곳을 경유 또는 이들 국가 중 한 곳에서 환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1. ~ 12. (생략)

13.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써,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15. (생략)

② ~ ⑤ (생략)

제28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정

-----.

1. ~ 12. (현행과 같음)

13. 가의1 지역-----

-----.

14. -----

- 가의1 지역-----

-----.

1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정

의와 신청조건) ① (생략)

②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및 대상 품목을 정하여 제5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별표 6의 “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 5.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자포괄수출허가는 수출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지국가가 제10조제1호의 가 지역인 경우, 이후의 재수출에 관해서는 해당국가의 수출통제제도에 따르며, 수출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지국가가 제10조제2호의 나 지역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의와 신청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가의1 지역-----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가
의1 지역-----

----- 가의2 지
역 또는 나 지역-----

제29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국가가 별표 6의 “가” 지역에 해당하거나, 최종수하인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서류를 면제한다.

1. ~ 5. (생략)

제32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지국가가 “가” 지역인 경우 : 3년 이내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가” 지역에 소재한 위탁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한 때 : 3년 이내

3.·4. (생략)

② (생략)

제34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 (생략)

-----.

제29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신청서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가의1 지역-----

-----.

1. ~ 5.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① -----
-----.

1. ----- 가의1 지역-----

2. ----- 가의1 지역-----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품목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① (현행과 같음)

(이하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 등’이라 한다)을 별표 6의 “나”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 12. (생략)

②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별표 6의 “가”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53조(중개허가의 대상) ①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

----- 가
의2 지역 또는 나 지역-----

1. ~ 12. (현행과 같음)

② -----
- 가의1 지역-----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중개허가의 대상) ① -----

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전략물자등의 수출을 중개하고자 할 때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를 면제한다.

1. (생략)
2. 중개의 대상이 되는 수출의 수출국 또는 수입국이 “가” 지역에 속하는 경우

②·③ (생략)

제9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2월 27일까지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별표 6 제1호가 목의 지역-----

②·③ (현행과 같음)

제9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제10조 관련)

1. 전략물자 수출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지역명	해당 국가
가.	가의1 지역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가의2 지역	일본
나.	나 지역	북한(제3국을 경유하여 재수출되는 경우에 한함), 나우루, 네팔,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대만, 마카오, 홍콩,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동티모르, 마셜군도,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부탄, 서사모아, 솔로몬,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휘지, 팔라우, 가이아나,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세인트 키츠 네비스, 안티구아바브다, 자메이카, 칠레,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페루, 수리남, 브라질, 과테말라, 도미니카(공), 볼리비아,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쿠바,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몰타, 벨로루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루지야, 사이프러스, 보스니아, 리히텐슈타인, 교황청, 에스토니아, 안도라, 산마리노, 마케도니아, 모나코, 레바논, 수단, 예멘, 오만, 요르단, 이란, 카타르, 이집트,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이스라엘, 시리아, 가나, 가봉, 감비아, 기네, 기네비소,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지부티,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와,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구자이리),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 토고, 탄자니아, 튀니지, 카보베르데, 모잠비크, 짐바브웨, 세이셸, 남아공, 레소토, 스와질랜드 등 가 목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

2. 수출지역의 구분은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종목적지가 가의1 지역이라 하더라도 가의2

지역 또는 나 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으로 본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별 특례

구분	특례		등급			
			A	AA	AAA	
개별 수출 허가	가의1 지역		심사면제	심사면제	심사면제	
	가의2 지역, 나 지역		-	-	서류면제	
	같은 수출품목(동일HS번호, 동일통제번호)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한 실적이 있는 경우		서류면제*	서류면제	서류면제	
	최종사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단, 재판 때 또는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제외)	1.수출자의 최대주주 2.수출자의 해외 본점 3.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수출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에 한함) 4.수출자의 해외 지점 (단 수출자가 본점)	가의1 지역	허가면제	허가면제 모회사가 같은 해외법인 포함	허가면제 모회사가 같은 해외법인 포함
			가의2 지역, 나 지역	서류면제*	서류면제	심사면제 모회사가 같은 해외법인 포함
	암호화품목(통제번호: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최종사용용도가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수용 제품의 개발·생산 용도로 수출할 때, 최종사용자의 최대주주가 한국법인인 민간기업인 경우			허가면제	허가면제	허가면제
	가의2 지역, 나 지역 개별수출허가 처리기간 *소관체제 가입국으로 동 물자 수출 포함			15일 (*표시는 10일)	10일	5일
	계약 체결 없이 제5조(허가기관)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허가면제(단, 실적보고 시 기술 수출내역 보고)			-	○	○
	암호기능이 주요 기능 혹은 기능군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만 한정되고, 공개되거나 상용화된 암호화 표준을 구현하여 정보를 송수신하고 저장하는 민수용 소프트웨어 중 민간기업의 운영효율화 및 판촉 지원 용도, 모바일 단말기 용도인 경우 허가면제			-	-	○
	서비스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설치하고,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가 별표2 제5부 제2장 주3에 따른 예외조항을 만족하는 경우, 서비스 프로			-	-	○

	그램에 대한 허가 면제				
	해외에서 국내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바세나르체체의 민감·초민감 기술을 ‘가’ 지역에 건적, 입찰 제안서와 함께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허가 면제. 다만, 관련 품목의 설계, 생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의 기술은 제외		-	-	0
포괄 수출 허가	사용자포괄허가 (가의1 지역)		○	○	○ 통제번호 5자리
		기간	3년	3년	3년
	사용자포괄허가 (가의2 지역, 나 지역)		△	○	○ 통제번호 5자리
		기간	-	2년	3년
	품목포괄허가		X	△ ‘가’지역만	0
		기간	-	3년	3년
	정기보고 주기	실적보고	반기	반기	연간
운영보고		연간	연간	연간	
중개 허가	허가면제	X	○	○	
	실적보고	-	반기	반기	
수출허가면제에 대한 수출거래보고			7일	반기	연간

※ 민감·초민감품목, 원자력 전용품목,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체의 Category I 품목 및 군용물자품목은 개별수출허가의 특례 적용을 제외하며, 포괄수출허가의 대상품목은 별표8을 따른다.